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안전복지위원회
2022. 12. 12(월)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47
제안일자	2022. 11. 17.
회부일자	2022. 11. 23.

행정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최태림 의원 외 9명

2. 제안이유

-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주민투표청구에 전자서명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한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 하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 삭제(안 제3조)
- 주민투표의 대상 삭제(안 제4조)
-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 주민수 하향조정(안 제5조)
- 거소 관련 표현 삭제(안 제8~9조)
- 주민투표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명시(안 제8조 및 제10조)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정비(안 제12~16조)
- 주민투표 야간운동 제한시간을 개정함(안 제18조)

4. 관련부서 협의

-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법무혁신담당관)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감사관)

5. 입법예고 결과

- 예고방법 :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공고
- 예고기간 : 2022.11.23. ~ 11.28.(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118호)
- 의견제출 : 없음

6. 검토의견

□ 제안이유

- 2022년 4월 26일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이 하향되었고 2023년 4월 27일부터 주민투표청구에 전자서명제 등이 도입됨¹⁾
- 본 개정안은 ‘「주민투표법」의 개정사항’과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같은 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투표제도의 활성화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제안함.

1) 「주민투표법」 개정이유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결과의 개표요건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본 개정안은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조건 삭제, ▲주민투표 대상 삭제, ▲주민투표 청구 서명 주민수 조건 하향, ▲전자서명 청구제도 명시, ▲주민투표 야간운동 제한시간 조정 등을 개정하는 것임.

○ 안 제3조는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 있어서 연령조건을 삭제함.

- 이는 「주민투표법」 제5조2)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주민의 주민투표권에 관한 연령조건을 명시하고 있어, 다시 조례에서 연령을 명시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며,

- 외국인 주민투표권의 연령조건을 삭제하도록 한 안 제3조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기존 조례 제4조 주민투표 대상 규정을 삭제함

- 기존 「주민투표법」 제7조제1항은 주민투표 대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왔으나, 「주민투표법」 제7조제1항이 개정되어 주민투표 대상이 법에 명시됨에³⁾ 따라 조문을 정지하는 것임.

2) 제5조(주민투표권)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②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주민투표법」 주민투표의 대상 관련 개정

기 「주민투표법」 제7조제1항	개정 「주민투표법」 제7조제1항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u>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u> 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u>주요결정사항</u> 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 안 제5조는 주민투표 실시 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규정함.
 - 이는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요건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7분의 1’에서 ‘20분의 1’로 하향 조정해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8조는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에 있어 전자서명청구인명부를 포함하도록 규정함.
 - 이는 「주민투표법」이 개정되면서 2023년 4월 27일부터는 전자

가. 예산 편성·의결 및 집행

나. 회계·계약 및 재산관리

3의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서명을 이용한 주민투표청구 서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조례에 전자서명청구제도의 도입을 명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12조부터 제16조는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 「주민투표법」 제12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기존 조례에서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관한 모든 내용을 제12조에 규정하였으나, 이는 법 조문 체계에 맞지 아니하여 법제처와 행정안전부가 몇 개의 조문으로 나누어 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바,

- 안 제12조부터 제16조는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4개 조문으로 나누어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18조는 공공장소에서의 투표운동 야간 제한시간을 새로 규정함.

- 「공직선거법」 제102조제1항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직선거법」 제102조의 야간연설 등의 제한 규정과 기존 조례의 투표운동에 관한 야간 제한시간이 서로 달라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바,

- 안 제18조는 「공직선거법」 제102조의 야간연설 등의 제한 규정과

투표운동 야간 제한 시간을 일치시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2022년 4월 26일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이 18세로 하향되었고 2023년 4월 27일부터 주민투표청구에 전자서명이 도입됨에 따라 「경상북도의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바,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조건 삭제, ▲주민투표 대상 삭제, ▲주민투표 청구 서명 주민수 조건 하향, ▲전자서명청구제도 명시, ▲투표운동 야간운동 제한시간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2023년 4월 27일 시행되는 같은 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투표제도의 활성화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